

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

의안
번호 1830

제출년월일 : 2009. 4. 2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이유

- 『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』의 개정·시행(2008.11.5.)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-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위원 수 확대를 통한 공공부문과民間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의 복지역량과 민간복지자원의 협력구조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협의체의 위원 수를 “10인 이상 20인 이하”에서 “10명 이상 30명 이하”로 함(안 제3조).
-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3조).
-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의 해촉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(안 제7조).

□ 개정 조례안 : 별첨

□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 발췌서: 별첨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3 및 제1조의4
- 관계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- 사전예고 : 해당없음
 - 「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의거 생략
-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
- 기타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시장·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·보건소장·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1.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
3.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
4. 공익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
이하 같다)에서 추천한 자

5.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, 그 1명은 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되, 사회복지업무담당(팀장), 보건의료업무담당(팀장)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1.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실무자
3.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실무자
4.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5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
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·연구 또는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기관·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
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주민생활지원과
임 안 자	실·과장	주민생활지원과
	직위·성명	최억용
	담당·팀장	서비스연계담당
	직위·성명	정소우
	담당자	곽순례
성명·전화		(행정2831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시장·사회 복지업무담당국장·보건소장·설무협의체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 <p>〔신설〕</p> <p>〔신설〕</p> <p>〔신설〕</p> <p>〔신설〕</p> <p>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, 그 1인은 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</p> <p>④ 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⑤ 설무협의체의 위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, 사회복지 업무담당(팀장), 보건의료업무담당(팀장)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/p> <p>〔신설〕</p> <p>〔신설〕</p> <p>〔신설〕</p> <p>〔신설〕</p> <p>〔신설〕</p> <p>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,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 <p>⑦ (생략)</p> <p>제7조(위원의 해촉)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품위손상,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〔신설〕</p> <p>〔신설〕</p> <p>〔신설〕</p> <p>〔신설〕</p>	<p>제3조(구성) ①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.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.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 3.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 4. 공익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주전한 자 5.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나머지 1명 및 부위원장은 ④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되, 1.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.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실무자 3.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실무자 4.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. 공익단체에서 주전한 자 6.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기관·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.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

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수정안

의안 번호	1830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9. 4. 16.
제 안 자 : 경제사회위원장

1. 수 정 이 유

- 위원 구성안 중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주 요 골 자

- 대표협의체 위원 중 보건소장을 상록수 보건소장으로 변경함(안 제3조).
- 기존 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을 추가함(부칙).

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수정안

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보건소장”을 “상록수보건소장”으로 한다.

부칙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위원 중 상록수보건소장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 후 새로운 협의체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.

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3조(구성) ① (생략)	제3조(구성) ① (원안과 같음)
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시장·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· <u>보건소장</u> · <u>실무협의체위원장</u> 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	② <u>상록수보건소장</u>
부칙	부칙
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	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</u> <u>제3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위원 중 상록수</u> <u>보건소장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</u> <u>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 후 새로운</u> <u>협의체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.</u>